

OK 법조윤리 기출해설

2026년판 1쇄 정오표

(2026년 04월 06일 기준)

※ 본 정오표는 2026년 3월 16일 발행된 “OK 법조윤리 기출해설”
(2026년판) 1쇄에 대한 내용입니다.

OK 법조윤리 기출해설 2026년판 - 정오표

내용 추가 및 오류 수정 (2026년 04월 06일 기준)

2026년 03월 16일 발행된 OK 법조윤리 기출해설(2026년판) 1쇄의 추가(보완) 내용 및 오타자 등을 정리한 정오표를 게재합니다. 수정 및 추가된 부분은 위치란에 표기해 두었습니다.

추가적으로 정오내용이 발견되는 대로 본 정오표가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.

페이지 [위치]	수정사항	수정 전	수정 후
p. 165 - 13회 문 39	[지문 - 수정]	지문 ① 아래에서 두 번째 줄, ~ 그 법률의견서는 변호인-의뢰인 특권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.	① ~ 그 법률의견서는 변호인-의뢰인 특권이 인정된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.
	[해설 - 수정]	① 2009도6788 판결에서 대법원은 현행법상 변호인-의뢰인 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. 반면, 위 판결의 원심에서는 위 특권이 해석상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. 이에 관하여는, 9회 문 10 참조	① 변호인-의뢰인 간 의사교환 내용, 관련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인 변호인-의뢰인 특권이 인정된다면 피고인 A의 동의 없이는 위 법률의견서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. 이에 관하여는, 9회 문 10 참조
	[정답 - 수정]	정답 ④	정답 ①, ④
p. 172 - 9회 문 10	[해설 - 수정]	(앞 부분 생략) ①과 ②는 ~ 옳은 지문이 되겠다.	(앞 부분 생략) ①과 ②는 이른바 '변호인-의뢰인 특권'을 해석상 인정한 하급심인 2008노2778 판결을 지문화한 것이다. 그러나 대법원은 위 하급심 판결과 달리 현행법상으로는 위 특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(2009도6788; 위 판결의 상고심 판결임). 그런데 최근 2020. 1. 29. 위 특권을 도입하는 취지로 변호사-의뢰인 간 '비밀유지권'을 명문으로 신설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, 그 이후 대법원은 26. 2. 20.자 결정(2024모730) 및 26. 2. 26.자 판결(2025도4422)로써 변호인-의뢰인 간 의사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자료 등에 대한 압수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. 이는 대법원이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서 위 특권이 도출된다고 인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.
	[정답 - 수정]	정답 ④	정답 ②, ④